

#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Ⅱ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 입주자모집공고 [한뜰마을 4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계약서류를 미리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만 전자계약 진행이 가능하며 전자계약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선정일 이후 당사 홈페이지(<http://sejong1-thehue.com>)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14. 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한다)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 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오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및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분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분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분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1호의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자로서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해당제한 대상 주택 :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해당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조치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금지되며, 1주택 보유세대는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기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선정 업무는 한국주택협회에서 실시하며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해당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제26조2의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제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수의 1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jong1-thehu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의거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이 설정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분양주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청약접수 및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 시행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내 중복 당첨자 처리기준(국토교통부 시행 주택기금과-3502)에 의거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함.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부적격 처리됨. 또한,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또는 무효처리됨.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정하는 분양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서 배제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모든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한국주택협회(http://apt2.housing.or.kr)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규제(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제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음

■ 분양권 전매 제한(부기등기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8.12.28.)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되며,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택은 5년간(2023.12.28.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제6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2월 19일(수)		12월 20일(목)	12월 21일(금)	12월 28일(금)	2019년 01월 08일(화) ~ 2019년 01월 10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전자계약 또는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세종시, <a href="http://apt.housing.or.kr">http://apt.housing.or.kr</a>)</li> <li>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www.ap2you.com)</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li> <li>- PC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kbstar.com</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li> <li>- PC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kbstar.com</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li> <li>- PC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당사 건본주택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3658호(2018.12.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뜰마을 4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 지상35층 6개동 총 596세대 중 일반공급 149세대  
 [특별공급 447세대(이전기관종사자 등 298세대, 기관추천 31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49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이전 기관	일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8001293-01	84.6373A	84A	84.6373	27.7602	112.3975	9.2976	64.5765	186.2716	30.5959	145	72	16	14	18	4	124	21	6
	2018001293-02	84.9478B	84B	84.9478	27.7785	112.7263	9.3317	64.8135	186.8715	30.7082	90	45	10	8	12	2	77	13	4
	2018001293-03	84.9300C	84C	84.9300	27.8857	112.8157	9.3297	64.7999	186.9453	30.7017	40	20	2	4	6	1	33	7	2
	2018001293-04	84.9762D	84D	84.9762	27.9768	112.9530	9.3348	64.8351	187.1229	30.7184	12	6	-	1	1	-	8	4	-
	2018001293-05	84.9762E	84E	84.9762	27.9768	112.9530	9.3348	64.8351	187.1229	30.7184	36	18	1	3	5	-	27	9	-
	2018001293-06	84.8486F	84F	84.8486	27.5861	112.4347	9.3208	64.7378	186.4933	30.6723	41	20	2	3	6	-	31	10	4
	2018001293-07	84.8486G	84G	84.8486	27.5861	112.4347	9.3208	64.7378	186.4933	30.6723	13	7	-	1	1	-	9	4	-
	2018001293-08	115.2644A	115A	115.2644	36.4329	151.6973	12.6620	87.9444	252.3037	41.6675	102	51	-	10	-	3	64	38	2
	2018001293-09	115.2644B	115B	115.2644	36.4329	151.6973	12.6620	87.9444	252.3037	41.6675	16	8	-	2	-	-	10	6	2
	2018001293-10	115.6030C	115C	115.6030	36.2519	151.8549	12.6992	88.2028	252.7569	41.7899	51	26	-	6	-	2	34	17	2
	2018001293-11	115.3263D	115D	115.3263	36.4669	151.7932	12.6688	87.9916	252.4536	41.6898	31	16	-	3	-	1	20	11	-
	2018001293-12	115.3263E	115E	115.3263	36.4669	151.7932	12.6688	87.9916	252.4536	41.6898	13	6	-	1	-	-	7	6	2
	2018001293-13	134.1300A	134A	134.1300	44.9317	179.0617	14.7345	102.3385	296.1347	48.4873	4	2	-	-	-	-	2	2	-
	2018001293-14	154.8854A	154A	154.8854	51.3853	206.2707	17.0145	118.1745	341.4597	55.9902	2	1	-	-	-	-	1	1	-
합 계											596	298	31	56	49	13	447	149	24

※ 주차대수는 총 1,154대가 설치되며, 판매/근린생활시설 주차 129대(지하1~지하2층), 공동주택은 1,106대(지상1~지하3층)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타입	전용면적 (㎡)	동별 (라인별)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10%)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시	2019.03.15.	2019.09.16.	2020.03.16.	2020.09.15.	2021.03.15.	2021.09.15.				
84.6373A	84A	84.6373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층	6	79,172,569	290,827,431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5층	6	79,172,569	294,827,431		374,0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112,200,000	
				6~10층	30	79,172,569	298,827,431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13,400,000	
				11~20층	56	79,172,569	301,827,431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21~30층	44	79,172,569	305,827,431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31층 이상	3	79,172,569	309,827,431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84.9478B	84B	84.9478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층	4	79,463,021	304,536,979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5층	4	79,463,021	308,536,979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6~10층	20	79,463,021	312,536,979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11~20층	36	79,463,021	316,536,979		396,0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21~30층	25	79,463,021	320,536,979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31층 이상	1	79,463,021	324,536,979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84.9300C	84C	84.9300	404호 405호	4층	2	79,446,370	304,553,630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5층	2	79,446,370	308,553,630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6~10층	8	79,446,370	312,553,630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11~20층	18	79,446,370	316,553,630		396,0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21~30층	8	79,446,370	320,553,630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31층 이상	2	79,446,370	324,553,630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84.9762D	84D	84.9762	402호 406호	6~10층	2	79,489,588	301,510,412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11~20층	2	79,489,588	305,510,412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21~30층	2	79,489,588	309,510,412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402호 406호	11~20층	4	79,489,588	317,510,412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21~30층	2	79,489,588	321,510,412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84.9762E	84E-1	84.9762	402동 402동 406동	602호 1402호	2	79,489,588	311,510,412		391,0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2202호 602호	2	79,489,588	315,510,412						395,0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406동 406동	1402호 2202호	2	79,489,588				319,510,412		399,0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1003호 1803호	2	79,489,588				323,510,412		403,0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402동 406동	2603호 1003호	2	79,489,588				327,510,412		407,0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1803호 2603호	2	79,489,588				331,510,412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84E-2	84.9762	84.9762	402동 402동 406동		1002호 1802호	2	79,489,588	306,510,412		386,0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5,800,000	
					2602호 1002호	2	79,489,588	310,510,412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1802호 2602호	2	79,489,588	314,510,412		394,0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402동 402동 406동		603호 1403호	2	79,489,588	318,510,412		398,0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203호 603호	2	79,489,588	322,510,412		402,0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1403호 2203호	2	79,489,588	326,510,412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84E-3	84.9762	84.9762	402동 402동 406동	1102호 1902호	4	79,489,588	305,510,412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2702호 1102호	2	79,489,588	309,510,412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402동 402동 406동	703호 1503호	2	79,489,588	313,510,412		393,0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2303호 703호	2	79,489,588	317,510,412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1503호 2303호	2	79,489,588	321,510,412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주택형	타입	전용면적 (㎡)	동별 (라인별)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10%)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19.03.15.	2019.09.16.	2020.03.16.	2020.09.15.	2021.03.15.	2021.09.15.		
84.8686F	84F-1	84.8486	402동 402호	4층	2	79,370,226	301,629,774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402동 1202호	11~20층	4	79,370,226	313,629,774		393,0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402동 2002호															
			402동 2802호	21~30층	2	79,370,226	317,629,774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406동 402호															
			406동 1202호	4층	2	79,370,226	313,629,774		393,0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406동 2002호															
			406동 2802호	6~10층	2	79,370,226	321,629,774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402동 803호															
			402동 1603호	11~20층	2	79,370,226	325,629,774		405,0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406동 803호															
			406동 403호	21~30층	2	79,370,226	329,629,774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406동 1603호																	
	406동 2403호	6~10층	2	79,370,226	304,629,774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402동 802호																	
	402동 1602호	11~20층	2	79,370,226	308,629,774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402동 2402호																	
	406동 802호	21~30층	2	79,370,226	312,629,774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406동 1602호																	
	406동 2402호	11~20층	4	79,370,226	320,629,774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402동 1203호																	
	402동 2003호	21~30층	2	79,370,226	324,629,774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406동 2803호																	
	84F-2	84.8486	84.8486	402동 502호	5층	2	79,370,226	295,629,774		375,0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402동 1302호				11~20층	2	79,370,226	303,629,774		383,0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402동 2102호																		
406동 502호				21~30층	3	79,370,226	307,629,774		387,0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406동 1302호																		
406동 2102호				6~10층	2	79,370,226	311,629,774		391,0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406동 2902호																		
402동 903호				11~20층	2	79,370,226	315,629,774		395,0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402동 1703호																		
402동 2503호				21~30층	2	79,370,226	319,629,774		399,0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406동 903호																		
406동 1703호				6~10층	2	79,370,226	302,629,774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406동 2503호																		
84.8686G	84G	84.8486	402동 2호	11~20층	2	79,370,226	305,629,774		385,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406동 2호	21~30층	2	79,370,226	309,629,774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402동 5호															
			406동 3호	11~20층	2	79,370,226	317,629,774		397,0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406동 3호															
			402동 3호	21~30층	3	79,370,226	321,629,774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406동 3호																		
115.2644A	115A	115.2644	401동 2호	11~20층	18	107,822,186	388,343,467	38,834,347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403동 2호	21~30층	20	107,822,186	392,888,921	39,288,893	540,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401동 3호	31층 이상	7	107,822,186	398,343,467	39,834,347	546,0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403동 3호	4층	2	107,822,186	388,343,467	38,834,347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401동 3호	5층	2	107,822,186	393,798,012	39,379,802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403동 3호	6~10층	10	107,822,186	398,343,467	39,834,347	546,0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401동 3호	11~20층	20	107,822,186	403,798,012	40,379,802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403동 3호	21~30층	16	107,822,186	408,343,467	40,834,347	557,0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67,100,000	
			401동 3호	31층 이상	7	107,822,186	413,798,012	41,379,802	563,0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403동 3호	4층	2	107,822,186	373,798,012	37,379,802	519,0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115.2644B	115B	115.2644	401동 2호	5층	2	107,822,186	379,252,558	37,925,256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403동 2호	6~10층	10	107,822,186	383,798,012	38,379,802	53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401동 2호	11~20층	2	107,822,186	388,343,467	38,834,347	535,0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403동 2호															

주택형	타입	전용면적 (㎡)	동별 (라인별)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10%)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19.03.15.	2019.09.16.	2020.03.16.	2020.09.15.	2021.03.15.	2021.09.15.	
115.6030C	115C	115.6030	401동 4호 406동 4호	4층	2	108,138,924	388,964,614	38,896,462	536,0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5층	2	108,138,924	393,510,069	39,351,007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6~10층	10	108,138,924	398,964,614	39,896,462	547,0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64,100,000
				11~20층	20	108,138,924	403,510,069	40,351,007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21~30층	15	108,138,924	408,964,614	40,896,462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31층 이상	2	108,138,924	413,510,069	41,351,007	563,0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115.3263D	115D	115.3263	404동 2호 405동 2호	6~10층	2	107,880,089	383,745,373	38,374,538	53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11~20층	17	107,880,089	389,199,919	38,919,992	536,0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21~30층	10	107,880,089	393,745,373	39,374,538	541,0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31층 이상	2	107,880,089	398,290,828	39,829,083	546,0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115.3263E	115E	115.3263	404동 2호 405동 2호	4층	2	107,880,089	374,654,464	37,465,447	520,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5층	2	107,880,089	379,199,919	37,919,992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6~10층	8	107,880,089	383,745,373	38,374,538	53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59,000,000	
				11~20층	1	107,880,089	389,199,919	38,919,992	536,0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134.1300A	134A	134.1300	402동 2804호 403동 3204호 404동 3104호 405동 1704호	11~20층	1	125,469,701	570,482,090	57,048,209	753,0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21~30층	1	125,469,701	576,845,726	57,684,573	760,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31층 이상	2	125,469,701	584,118,453	58,411,846	768,0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30,400,000	
154.8854A	154A	154.8854	401동 3304호 406동 2804호	21~30층	1	144,885,151	664,649,862	66,464,987	876,0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262,800,000	
				31층 이상	1	144,885,151	672,831,680	67,283,169	885,0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265,500,000	

※ ① 주택형 84.9762E 내 84E-1, 84E-2, 84E-3타입 / ② 주택형 84.8686F 내 84F-1, 84F-2, 84F-3타입의 일부 서비스면적이 상이하여 공급금액 차등을 주었으므로 청약&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주택형 84.6373A 의 경우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의 위치가 변경된 치환세대가 존재하오니 청약&계약 전 해당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는 공급안내문 등의 유인물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해당 동·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기관의 개인별 대출비율에 따라 이자후불제가 적용됩니다.

#### ■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 동호 기재

주택형	타입	구분	해당 동	해당 호수
84.6373A	84A	일반 세대	401동, 402동, 403동, 405동	전체
		대피공간 ↔ 실외기실 치환세대	404동, 406동	전체

■ 청약주택형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6373A	84.9478B	84.9300C	84.9762D	84.9762E	84.8486F	84.8486G	115.2644A	115.2644B	115.6030C	115.3263D	115.3263E	134.1300A	154.8854A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1 84E-2 84E-3	84F-1 84F-2 84F-3	84G	115A	115B	115C	115D	115E	134A	154A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15A	115B	115C	115D	115E	134A	154A	합 계		
이전기관 종사자 등(50%)		72	45	20	6	18	20	7	51	8	26	16	6	2	1	29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당해지역(50%)	3	2	1	-	1	1	-	-	-	-	-	-	-	-	8	
		기타지역(50%)	3	2	1	-	-	1	-	-	-	-	-	-	-	-	-	7
	국가유공자	당해지역(50%)	2	1	-	-	-	-	-	-	-	-	-	-	-	-	-	3
		기타지역(50%)	2	1	-	-	-	-	-	-	-	-	-	-	-	-	-	3
	중소기업 근로자	당해지역(50%)	2	1	-	-	-	-	-	-	-	-	-	-	-	-	-	3
		기타지역(50%)	2	1	-	-	-	-	-	-	-	-	-	-	-	-	-	3
장기복무 군인	전체(100%)	2	2	-	-	-	-	-	-	-	-	-	-	-	-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해지역(50%)	7	4	2	1	2	2	1	5	1	3	2	1	-	-	31	
		기타지역(50%)	7	4	2	-	1	1	-	5	1	3	1	-	-	-	-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4	9	4	1	4	4	1	-	-	-	-	-	-	-	-	37
		일반공급(25%)	4	3	2	-	1	2	-	-	-	-	-	-	-	-	-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해지역(50%)	2	1	1	-	-	-	-	2	-	1	1	-	-	-	-	8
		기타지역(50%)	2	1	-	-	-	-	-	1	-	1	-	-	-	-	-	5
합 계		124	77	33	8	27	31	9	64	10	34	20	7	2	1	44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 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2호의3 의거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의 세대원도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 분에 한해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86 1289 2107 1477">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b>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li> <li>※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계약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li> <li>※ 청약주택의 입주일(2022년 04월 예정) 이전에 퇴직 예정되어 있거나, 임기제 공무원 등 계약직 종사자로서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등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li> <li>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①세종특별자치시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와 ③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li> <li>※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으며, 지정계약기간에 계약을 못했을 지라도 특별공급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li> <li>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8-35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 공급세대수의 50%를 우선 배정함.</li> <li>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은 특별공급 청약일 2일전까지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청장에게 제출한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에 없는자는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관련 법령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하시기 바람.</li> <li>※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li> <li>●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선택(http://apt.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선택 → 사업명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약서 동의 → 청약내용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청약신청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완료</li> </ul> </li> <li>신청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시간은 08: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li> <li>-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li> </ul> </li> <li>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한국주택협회)을 통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동별 세대 구분 없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이 불가)</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단, 모집결과 140%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li> <li>※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세대가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호는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 발생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ul> </li> </ul>																		
<p><b>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철거주택소유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제외</li> <li>추천기관 <table border="1" data-bbox="286 1141 1182 1422">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철거주택 소유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 소유자</td> <td>내 세종특별본부</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td> <td>국가보훈처</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3개 시·도 지자체</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중소벤처기업부</td> </tr> <tr> <td>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body> </table> </li> </ul>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 소유자	내 세종특별본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개 시·도 지자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함.(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li> </ul>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 소유자	내 세종특별본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개 시·도 지자체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b>다자녀 특별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① <b>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li> <li>② <b>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li> <li>•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li> <li>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li> </ol> </li> </ul>
<p><b>신혼부부 특별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① <b>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에 한하여 2순위 자격 부여</li> </ul> </li> <li>②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li> </ul> </li> <li>③ <b>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b></li> <li>•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li> </ul> </li> <li>• <b>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제1순위에 우선공급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li> <li>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에 한하여 2순위 자격 부여</li> </ol> </li> </ul> </li> <li>• <b>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b>우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b></li> </ul> </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li> </ul> </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ol> </li> </ul>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자</li> <li>※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li> </ul> </li> <li>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세대주</li> <li>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ol> </li> <li>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 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li> <li>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li>-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li>-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li> </ul>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 ~ 7,464,006원	6,625,811원 ~ 7,950,972원	7,031,616원 ~ 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 ~ 8,086,007원	7,950,973원 ~ 8,613,553원	8,437,939원 ~ 9,141,100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단,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한국주택협회에서 담당하며,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의 <b>같은 주택형</b>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포함)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b>같은 주택형</b>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li> <li>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li> </o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로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li> <li>③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li> </ol> </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일정은 별도 통보)</li> <li>•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합니다.</li> </ul> <p>※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세대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며, 방문접수(건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인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도권 : 1년</li> <li>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li> <li>③ ①,②에 해당하는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li> </ol> </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의거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됨</li> <li>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 부여</li> </ul> </li> </ul>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li> </ul>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li> <li>•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을 개칭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li> <li>-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li> </ul> </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이 설정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li> <li>•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체제에 대하여 중복신청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해당체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li> <li>•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분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관계법령에 의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등의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li> </ul> </li> <li>•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li> <li>•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분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li> <li>•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음.</li> <li>•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본양주택 당첨여부 및 재당첨 제한기간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li> <li>•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에서 투기를 이전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신청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ul> </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li> </ul>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이하 : 가점제(100%) 적용 / 85㎡ 초과 : 가점제(50%) 적용, 추첨제(50%) 적용</li> <li>•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li>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가점제 항목중 부양가족수 산정(소유자 및 배우자포함) 기준 대상자에서 제외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인 자</li> <li>-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li> <li>-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li> </ul> </li> </ul>	전국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점제(100%) 적용(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b></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ul>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50%) / 추첨제(50%) 적용.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자동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li> <li>• <b>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의 주택은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함.</b></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li>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ul>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①~③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li> <li>① 세대주가 아닌 자</li> <li>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li> <li>③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li> <li>※ 과거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대상으로 함</li> </ul>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 추첨제 적용(100%)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의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예치기준금액에 따른 청약면적 변경(종액) 시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예치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함.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음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전원(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청약가점제 항목중 부양가족 수 산정(소유자 및 배우자포함) 기준 대상자에서 제외됨.</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비 고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 제외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시 부양가족수 제외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정 방법
<p>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li> <li>•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 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li> <li>•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 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li> <li>※ <b>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의 주택은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함.</b></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li> </ul>
<p>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와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당첨사실 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전검수(서류접수) 기간에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랍.</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이 취소된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ul>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2018.12.19(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한국주택협회)	•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http://apt.housing.or.kr)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12.19(수)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II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일원)
일반공급	1순위	2018.12.20.(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8.12.21.(금)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로 신청한 자는 필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라 필수 제출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12.1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로 신청한 자는 필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라 일정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제출 명확화	
이전기관 종사자 등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본인	동·호수 발표일(2018.12.28.)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배점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만19세이상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시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생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도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대리인용)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쑤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ul>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18.12.28.(금)</li> <li>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01.08.(화)~2019.01.10.(목) (10:00~16:00)</li> <li>장소 -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II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일원)</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수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12.28.(금) ~ 2019.01.06.(일)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8.12.2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1.08.(화) ~ 2019.01.10.(목) 3일간, 10:00 ~ 16:00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II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일원)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포함)
- ※ 입주자모집공고문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주택의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수 기간 별도 안내 예정)

###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 본 사업지는 민간아파트 최초로 전자계약이 도입됩니다. 아래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진행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선정일 이후 당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전자계약 활용 시 기존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당계약 기간 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등기시 아래와 같은 특수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계약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등기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전자계약 체결 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부부공동명의) 등 변경계약 발생이 없는 경우
    - 전자 또는 비전자 등기방식 모두 사용 가능
    - 나. 분양계약 체결 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부부공동명의)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자계약 방식으로 한 건 이라도 진행한 경우
      - 비전자 등기방식만 사용 가능(추후 시스템개발로 인해 전자등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으로 발생하는 각종 혜택(잔금대출 금리 인하, 등기비용 절약) 등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입주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시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서면계약을 중복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전자계약서의 출력은 가능합니다.
  - 최초 계약 체결 후 전자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서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통 (특별공급 포함)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아파트계약용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		위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 양식은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상기 "부적격자 청약자격 제한"과 같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복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주변의 신속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분양	756001-00-089783	한신공영(주)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 계약자 대출안내

-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관련 주요 내용

### ○ 무주택세대

-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한이 없으나 무주택세대가 2018.09.14.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함. (단,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 1주택세대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됨.]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목적의 담보대출을 위한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나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 시 고가주택 구입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항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나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정부가 열거한 예외사례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승인이 가능함.

### ○ 2주택세대

- 2주택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음
- 2주택세대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2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
- 2주택세대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시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집한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

### ○ 공통적용 사항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주택을 2년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임.
- 9.14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착공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됨.
- 상기 모든 약정 위반 시 즉각적으로 대출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됨.

※ 동 자료는 개정된 감독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대출한도 등은 개인별,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업권별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른 청야과열지역으로서 중도금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 제한되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로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시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당사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후불제로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통보함.

## ■ 입주예정일 : 2022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될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출입일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출입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한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 통합경비실(1), 경로당(1), 보육시설(1), 독서실(남(1)/녀(1)), 작은도서관(1), 키즈도서관(1), 취미교실(1), 주민회의실(1), 맘스앤키즈카페(1), 맘스스테이션(1), 주민공동시설(1)(로비, 라커/샤워, 휘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Ⅶ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옵션,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주택형(㎡)	구 분		공급가격	계약금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계약시(10%)	잔 금 입주지정일(90%)
84.6373A	84A	32.3429	10,700,000	1,070,000	9,630,000
84.9478B	84B	23.2626	12,000,000	1,200,000	10,800,000
84.9300C	84C	24.6406	12,900,000	1,290,000	11,610,000
84.9762D	84D	17.3850	11,700,000	1,170,000	10,530,000
84.9762E	84E-1, 84E-2, 84E-3	22.2150	12,500,000	1,250,000	11,250,000
84.8486F	84F-1, 84F-2, 84F-3	21.5700	12,400,000	1,240,000	11,160,000
84.8486G	84G	17.3850	11,900,000	1,190,000	10,710,000
115.2644A	115A	29.5500	14,900,000	1,490,000	13,410,000
115.2644B	115B	22.0211	14,100,000	1,410,000	12,690,000
115.6030C	115C	29.2570	14,300,000	1,430,000	12,870,000
115.3263D	115D	27.5723	15,300,000	1,530,000	13,770,000
115.3263E	115E	18.6524	14,600,000	1,460,000	13,140,000
134.1300A	134A	23.6047	14,600,000	1,460,000	13,140,000
154.8854A	154A	28.4850	14,500,000	1,450,000	13,050,000

■ 발코니 확장 시 선택옵션

구 분		가변형 벽체 선택사항				기타 선택옵션		
주택형(㎡)	타입	1안	2안	3안	4안	1안	2안	
		무상옵션			유상옵션	무상옵션		
84.6373A	84A	기본형	침실1,2 통합형	-	-	정원(Light Box) 설치	정원(Light Box) 미설치	
84.9478B	84B			-	-	-	-	
84.9300C	84C			-	-	-	정원(Light Box) 설치	정원(Light Box) 미설치
84.9762D	84D			-	-	-	-	-
84.9762E	84E-1, 84E-2, 84E-3			-	-	-	-	-
84.8486F	84F-1, 84F-2, 84F-3			-	-	-	-	-
84.8486G	84G			-	-	-	-	-
115.2644A	115A	기본형	침실1,2 통합형	안방 알파룸형	안방 드레스룸형	-	-	
115.2644B	115B					-	-	
115.6030C	115C					-	-	
115.3263D	115D					-	-	
115.3263E	115E					거실 확장형	-	-
134.1300A	134A					침실1,2 통합형	-	-
154.8854A	154A	기본형	-	-	-	-		

※ 가변형 벽체 선택사항 4안(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계약시 3안 선택 후 ▶ 추후 옵션 계약 시 추가 선택품목인 시스템가구(안방 드레스룸 선반)를 계약하여야만 설치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Light Box) 설치는 84.6373A / 84.9300C 주택형에 한해서만 선택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발코니 확장	756001-00-089796	한신공영(주)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로서 분양대금 및 플러스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김치냉장고, 세탁기, TV),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건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분		확장형	기본형	기타
기준층 (여담이창)	내부창호		24mm 로이 복층유리 PL창	22mm 로이 복층유리 PL 이중창 (내부 복층일반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외부창호	개폐창	22mm 로이 복층유리 커튼월창호	
		고정창 테라스창(문)	43mm 로이 삼중유리 단창 (단창인 경우 내창은 설치되지 않음)	
저층부 (미서기창)	내부창호		24mm 로이 복층유리 PL창호	22mm 로이 복층유리 PL 이중창 (내부 복층일반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외부창호	개폐창	22mm 로이 복층유리 입면분할창호	
		고정창 테라스창(문)	43mm 로이 삼중유리 단창 (단창인 경우 내창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창호 계획중 고정창, 테라스창(문)의 경우 결로방지 및 입주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중창(내창 24mm 로이 복층유리 PL창, 내창 22mm 로이 복층유리 창호)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부 입면분할창호(미서기창호) 설치세대의 창호는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나 추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계약자의 요청 시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제공 예정임.

(단, 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시에는 외부 미서기창호 2짝 중 1짝이 고정되는 등 일부 창호 개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의 외기에 면하는 벽면 및 확장부위의 외기에 면하는 벽면에는 T10결로방지단열재를 포함한 T40두께의 마감재가 추가 설치되나,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본주택의 확장부위 외벽면은 T10결로방지단열재를 포함한 T40두께의 마감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시공사 결로방지재 반영으로 인하여 실사용면적이 일부 축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유리 및 외장패널 커튼월 시스템으로, 외부창호는 같은 타입이라도 세대 위치에 따라 외벽 마감재 및 창호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구분	품목	업체명	모델명	선택 가능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가전기기	하이브리드 쿡탑	린나이	RBR-HG300	전 주택형	650,000	65,000	585,000
	빌트인 냉장고	LG	S711SL24B		5,400,000	540,000	4,86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R-D222WX/NX		1,150,000	115,000	1,035,000
시스템가구	안방드레스룸 선반	스페이스맥스	115.2644A	115.2644A	540,000	54,000	486,000
			115.2644B	115.2644B	580,000	58,000	522,000
			115.6030C	115.6030C	810,000	81,000	729,000
			115.3263D	115.3263D	780,000	78,000	702,000
			115.3263E	115.3263E	660,000	66,000	594,000

▣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주택형(m <sup>2</sup> )	타입	설치 위치	설치 개소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84.6373A	84A	거실,주방,안방	3	LG/삼성 제품 중 선택 가능	4,500,000	450,000	4,05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84.9478B	84B	거실,주방,안방	3		4,500,000	450,000	4,05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84.9300C	84C	거실,주방,안방	3		4,500,000	450,000	4,05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84.9762D	84D	거실,주방,안방	3		4,500,000	450,000	4,05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84.9762E	84E-1	거실,주방,안방	3		4,500,000	450,000	4,050,000
	84E-2 84E-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84.8486F	84F-1	거실,주방,안방	3		4,500,000	450,000	4,050,000
	84F-2 84F-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84.8486G	84G	거실,주방,안방	3		4,500,000	450,000	4,05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000,000	700,000	6,300,000
115.2644A	115A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500,000	750,000	6,750,000
115.2644B	115B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500,000	750,000	6,750,000
115.6030C	115C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500,000	750,000	6,750,000
115.3263D	115D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500,000	750,000	6,750,000	

115.3263E	115E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500,000	750,000	6,750,000
134.1300A	134A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		8,500,000	850,000	7,650,000
154.8854A	154A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490,000	4,41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		8,500,000	850,000	7,650,000

■ 시스템 에어컨 장비선정표

주택형(㎡)	타입	설치 위치	제조사	실외기		실내기						
				수량	제품명	수량	제품명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84.6373A	84A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23MN1DBH1 RNW03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23MN1DBH1 RNW03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84.9478B	84B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84.9300C	84C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84.9762D	84D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84.9762E	84E-1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60MN1DBH1 RNW0600C2SP	AM040MN1DBH1 RNW040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84E-2 84E-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60MN1DBH1 RNW0600C2SP	AM040MN1DBH1 RNW040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84.8486F	84F-1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84F-2 84F-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84.8486G	84G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3MN1DBH1 RNW023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115.2644A	115A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3개소	AM060MN1DBH1 RNW0600C2SP	AM052MN1DBH1 RNW0520C2SP	AM040MN1DBH1 RNW040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2개소	AJ040MXHNBC1 AJ030MXHNBC1 RPUQ0401S2R RPUQ0301S2R	5개소	AM060MN1DBH1 RNW0600C2SP	AM052MN1DBH1 RNW0520C2SP	AM040MN1DBH1 RNW04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115.2644B	115B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50MXHNBC1 RPUQ0501S2R	3개소	AM052MN1DBH1 RNW0520C2SP	AM052MN1DBH1 RNW0520C2SP	AM040MN1DBH1 RNW040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2개소	AJ040MXHNBC1 AJ030MXHNBC1 RPUQ0401S2R RPUQ0301S2R	5개소	AM052MN1DBH1 RNW0520C2SP	AM052MN1DBH1 RNW0520C2SP	AM040MN1DBH1 RNW04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115.6030C	115C	거실,주방,안방	삼성전자 LG전자	1개소	AJ060MXHNBC1 RPUQ0601S2R	3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52MN1DBH1 RNW0520C2SP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LG전자	2개소	AJ040MXHNBC1 AJ030MXHNBC1 RPUQ0401S2R RPUQ0301S2R	5개소	AM072MN1DBH1 RNW0720C2SP	AM032MN1DBH1 RNW0320C2SP	AM052MN1DBH1 RNW052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AM020MN1DBH1 RNW0200C2SP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 및 각 침실(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거실 및 안방에 매립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전실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거실, 안방 및 침실 등에 매립냉매배관 전체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을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과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설치되었으며, 옵션 계약 시 삼성전자 또는 엘지전자 제품으로 선택 가능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사항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문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 현관바닥 및 디딤판 천연석),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수납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 약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약세서리 포함), 펜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가스쿡탑,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가전기기 일체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소화기,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84.6373A	84.9478B	84.9300C	84.9762D	84.9762E	84.8486F	84.8486G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금액	27,354,000	27,443,000	26,856,000	26,888,000	27,498,000	27,372,000	27,372,000

구분	115.2644A	115.2644B	115.6030C	115.3263D	115.3263E	134.1300A	154.8854A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금액	38,023,000	36,453,000	37,444,000	36,886,000	38,867,000	44,526,000	50,454,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m <sup>2</sup> )	구 분		공급가격	계약금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m <sup>2</sup> )		계약시(10%)	잔 금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84.6373A	84A	32.3429	5,900,000	590,000	5,310,000
84.9478B	84B	23.2626	4,200,000	420,000	3,780,000
84.9300C	84C	24.6406	4,500,000	450,000	4,050,000
84.9762D	84D	17.3850	3,100,000	310,000	2,790,000
84.9762E	84E-1	22.2150	4,000,000	400,000	3,600,000
	84E-2				
	84E-3				
84.8486F	84F-1	21.5700	3,900,000	390,000	3,510,000
	84F-2				
	84F-3				
84.8486G	84G	17.3850	3,100,000	310,000	2,790,000
115.2644A	115A	29.5500	5,400,000	540,000	4,860,000
115.2644B	115B	22.0211	4,000,000	400,000	3,600,000
115.6030C	115C	29.2570	5,300,000	530,000	4,770,000
115.3263D	115D	27.5723	5,000,000	500,000	4,500,000
115.3263E	115E	18.6524	3,400,000	340,000	3,060,000
134.1300A	134A	23.6047	4,300,000	430,000	3,870,000
154.8854A	154A	28.4850	5,200,000	520,000	4,680,0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은 기본형만 설치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변형 벽체 선택사항 선택불가)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 ☐ 유의사항

###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기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파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본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생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등.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냉, 난방용 냉각탑, 실외기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발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청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나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공동주택 부지면적	상업시설 부지면적	기부채납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	23,724.0000	20,747.3296	2,374.4738	602.1966	68.01%	368.90%

- 상기 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1-5생활권 H5블록의 공동주택의 명칭은 “한들마을 4단지”임.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도로 등 공공공간과 접한 부지 내 설치하는 보도블록, 보행등, 맨홀 등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었음.
- 당해 지구내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상업/업무용지, 공공공지, 광장, 공공청사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남측은 학교(어진중,성남고) 및 가름로(34M),보행전용육교, 서측은 1-12근린공원, 가재마을 9단지 아파트, 단지 동측으로 상업업무용지(C33, C35블록), 다솜1로(20M) 및 방축천, 북측으로 도음1로(24.5M), 공공청사(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울망유치원, 연양초등학교가 위치함.
- 사업부지와 인접한 1-12근린공원 경계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리부서와 협의중인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다소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사업부지와 1-12근린공원 경계부는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단지 조성후 레벨차이가 심한 경우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자동차린넷 집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또한 추가로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H5블록:596세대)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연양초, 중학생은 1학군,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학군으로 학군으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학교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관할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함.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관리주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출입이 불가할 수 있음.
-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행복도시 내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철타의 현황, 철타위치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19~35층 규모임.
- **지붕은 평지붕으로, 최상층에 주민공동시설인 스카이가든(유리온실, 어린이놀이터, 팜체험장)이 설치되며, 옥탑부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타워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단지 배치도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과 주관의 심의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차량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상 1층은 데크주차장으로 건축구조상 지하층 구조이나, 건축물대장의 층수는 지상1층에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 지상 2층은 구조상 지반층에 해당하는 구조로, 전체 피로티 구조이며, 일부 동에는 부대시설이 분산 배치되어있으며, 구조상 판매/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입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자 등의 출입에 제한이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자는 반드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지상 3층은 전체 피로티층으로, 소방 피난기구보관함, 아파트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주방환기설비(배기팬 및 탈취기, 방진패드 포함 높이2M~2.3M)가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 피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동 피로티의 높이는 피로티의 위치별로 상이하오니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설치하여야 하는바, 아파트는 연료전지 및 태양광설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402동과 404동 옥탑구조물 상단에 설치될 예정이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지붕층 일부에는 판매/근생용 냉각탑, 주방환기설비 및 실외기실이 집중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주거 저층 세대에 장비의 수증기,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발전기실/저수조/열교환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상업시설, 쓰레기투입구, 재활용보관소, 자전기보관소, DA, 채광창, 등의 설치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피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동은 구조상 계단실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구조임.
- 각동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 401동 4호라인 지붕층에는 소화저수조 및 펌프가 설치되므로 기계장비의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최상층의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2층 주동 코어 인근에는 공용창고가 설치되며, 창고용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당 1개소씩 데크주차장(지상1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로 데크주차장은 건축물대장 등재시, 지상1층으로 표시되나 지하층의 구조이며,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최상층에 설치되는 유리온실, 팜체험장,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로 각세대의 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시설 이용시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동 최상층 유리온실, 팜체험장, 어린이 놀이터는 유리구조물로 상단 및 하단 환기를 위한 개폐창이 설치되며, 상단 개폐창의 경우 자동개폐장치에 의해 작동 되며, 어린이놀이터는 바닥에 상치형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며, 유리온실의 경우 지역열원을 활용한 팬코일 유니트적용 및 바닥상치형 시스템에어컨 적용 예정임.

## ■ 단지내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3개층이며,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의 높이는 2.9M이며, 왕복2차로 폭은 주동선 7M이상, 보조동선은 구간별로 6~6.8M임.**
- 단지 출입구는 단지 북측 및 동측에 아파트 전용 주차장 출입구 2개소, 동남측에 판매/근린생활시설 전용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가 설치됨.
- 단지 북측 아파트 전용 주차장 출입구 및 남측 보행자 출입구에 열주형 구조물이 설치됨.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피로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투입구 및 재활용집적소,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피로티내 자전거보관소,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자동크린넷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2층 401동 피로티내에 설치되는 유아놀이터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며, 단지내에서 직접 진출입은 출입 가능 통로가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외관,조명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피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열주 구조물,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각동 주동 상부 옥상부 및 윈드가든(401/403동 25층, 402/406동 22층, 404동 24층, 405동 9층) 및 공공보행통로에 경관조명이 설치됨.**
- **본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로 상업시설부의 출입구 구조물, 상가 2층 난간대 수경시설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외장커튼월, 테라스

- 아파트 외벽 마감은 유리 및 외장패널로 시공될 예정이며, 주동 입면 계획에 따라서 같은 타입이라도 세대 위치에 따라 외벽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카달로그에 기재된 입면CG와,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외부 커튼월 창호는 풍동실험, 풍압계산 결과에 따라서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커튼월 일부구간에는 외장패널 또는 몰딩 등이 돌출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우천시 빗소리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커튼월 외장패널의 세부 색상은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되어 지며, 금속재의 특성상 기상상태 및 보는 각도에 따라 견본주택, 모형, CG등과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각동 기준층 단위세대 외부 창호는 커튼월 밖여닫이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 아파트 미서기창에 비하여 환기량이 부족할 수 있음.
- 각동 저층부 단위세대 외부 창호는 입면분할창(미서기형)이며, 동일 면적 동일 타입이라도 창호의 종류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 저층부 입면분할창호(미서기창호) 설치세대의 창호는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나 추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계약자의 요청 시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제공 예정임.(단, 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시에도 외부 미서기창호 2짝 중 1짝이 고정되는 등 일부 창호 개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입면분할창(미서기창) 적용 세대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401동 1호라인 4~7층(84A), 2호라인 4~11층(115B), 3호라인 4~11층(115A), 4호라인 4~11층(115C)
- 402동 1호라인 4~7층(84A), 2,3호라인 4~6층(84E-1, 84E-2, 84F-1, 84F-3, 84G) 4호라인 4~11층(84B)
- 403동 1호라인 4~7층(84A), 2호라인 4~11층(115B), 3호라인 4~11층(115A), 4호라인 4~11층(84B)
- 404동 1호라인 4~7층(84A), 2호라인 4~11층(115E), 3호라인 4~11층(84C), 4호라인 4~11층(84B)
- 405동 1호라인 4층(84A), 2호라인 4~8층(115E), 3호라인 4~8층(84C), 4호라인 4~8층(84B)
- 406동 1호라인 4~7층(84A), 2,3호라인 4~6층(84E-1, 84E-2, 84F-1, 84F-3, 84G) 4호라인 4~11층(115C)

- 각종 저층부 입면분할창(미서기창) 적용 세대의 외부면에는 이동가능한 수동식 슬라이딩 루버가 설치되며 창호의 위치 등에 따라 루버를 이동시키기 불편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일부 세대에 적용된 테라스는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구조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세대 계약자는 테라스 외곽부에 벽체, 창호 또는 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를 양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테라스세대 계약자는 테라스에서의 외부활동시 인접세대에 사생활침해 또는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테라스 진출입시 실내 바닥난방 및 우수 침투방지를 위하여 테라스 창호 하단부에 턱이 형성되어 있어 테라스 진출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을 주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 부대복리시설

### - 판매/근린생활시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총 149호실,연면적 15,644.4612㎡)**이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통합형으로 계획된 구조이므로, 일부 단지내 보도, 조경 및 기타 공용시설물은 아파트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설치공간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음.
- 판매/근린생활시설용 주차 계획은 지하1~지하2층 전용주차장(주차대수129대)이 설치되며, 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이 아파트와는 별도 계획되는 구조임.

### - 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1), 통합경비실(1), 경로당(1), 보육시설(1), 독서실(남(1)/녀(1)), 작은도서관(1), 키즈도서관(1), 취미교실(1), 주민회의실(1), 맘스앤키즈카페(1), 맘스스테이션(1), 주민공동시설(1)**  
**(로비, 라커/샤워, 화이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402동 2층 취미교실 및 주민회의실은 1층 맘스카페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이며, 403동 독서실은 지상2층 에듀센터 공용부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임.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계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 지상·지하주차장

- 주차대수는 총 1,154대가 설치되며, 판매/근린생활시설 주차 129대(지하1~지하2층), 공동주택은 1,106대(지상1~지하3층)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계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계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계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
- 지하 3층에 설치되는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의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간 이동이 불가함**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근린공원(1-12)는 LH에서 시행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본 단지와의 경계부 및 연결부위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중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되어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다소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근린공원(1-12)와 본 단지의 연결부는 레벨차이에 의해 계단 또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품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공사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는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김치냉장고 등), 유상음선 품목,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시공사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가스 하이브리드쿡탑은 별도 유상음선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6.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우오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 침실에 매립 설치됨.(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제외됨.)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아님**
- 각 타입 신발장 및 현관창고 내부에 통신단자함 공간이 노출 설치되어 점검시 선반 탈부착, 이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벽체 1개소에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 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함
- 84A, 84C 타입은 공모 컨셉인 라이트박스를 확장 선택시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분양가는 감액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4A, 84C 타입 라이트박스 선택시 라이트박스의 디자인 및 프레임 사이즈, 형태, 두께 및 사양, 프레임 칼라, 유리사양,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복층타입의 실내 계단 및 난간대 형식은 본공사시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람
- 테라스세대의 테라스와 실내 경계부에는 바닥난방 및 우수 유입방지 등을 위한 골조턱이 형성되어 테라스 바닥면과 단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테라스 진출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복층형 타입의 경우 기둥, 보 등 구조체가 실내, 벽부 또는 천장에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세대의 거실, 침실 등의 상부가 비확장 발코니, 테라스, 윈드가든인 경우, 단열재가 세대내부에 설치되어 커튼박스의 깊이가 기준층보다 낮게 설치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을 수 있음.
- 84A타입 주방 세탁실에 인접하여 실외기실(대피공간)이 설치되는 경우, 실외기실(대피공간) 내부에 설치된 복합단열재가 401동, 403동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84A타입 주방 세탁실에 인접하여 대피공간이 설치되는 주동은 404동 406동이며, 기타동은 해당 위치에 실외기실이 설치되오니 세부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84A타입의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의 위치가 변경된 치환세대의 경우 안방에 실외기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84D, 84E-1, 84E-2, 84E-3, 84F-1, 84F-2, 84F-3, 84G타입은 인접 테라스 우수 배수관이 세대 골조에 매립시공되어 우천시 소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양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84E-1, 84E-2, 84E-3타입은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타입별로 주방의 테라스 설치여부에 차이가 있고, 타입별로 테라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테라스가 설치되지 않는 타입은 해당위치에 창호가 설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84F-1, 84F-2, 84F-3타입은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타입별로 주방의 테라스 설치여부에 차이가 있고, 타입별로 테라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테라스가 설치되지 않는 타입은 해당위치에 창호가 설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84E-1, 84E-2, 84E-3, 84F-1, 84F-2, 84F-3타입은 **같은 타입이라도** 층수 위치에 따라 테라스에 접한 입면 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위치의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115B, 115E타입은 발코니는 주동입면특화 디자인에 따라 확장시에도 일부 오픈 발코니를 유지하여야 하며, 오픈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양지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15D, 115E은 주동 특성상 확장형 선택시 안방 및 침실, 거실의 길이가 다소 긴 장방형의 형태이므로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115D, 115E은 오픈 발코니 내부 벽면은 외부용 도장으로 마감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34A, 154A타입은 기둥, 보 등 구조체가 실내, 벽부 또는 천장에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134A, 154A타입의 오픈 테라스 및 오픈 발코니 부분은 외부용 도장으로 마감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 또는 오픈발코니 설치세대의 경우 테라스 및 오픈발코니 진출입시 실내 바닥난방 및 우수 침투방지를 위하여 창호 하단부에 턱이 형성되어 있어 진출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을 주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 3.0~3.2M이며, 천장고는 2.4M(우물천장 2.5M)로 전세대 동일함.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행복도시 택지지구 또는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함.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진입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등) 및 외부 패턴/색채, 그래픽 등은 디자인 디테일 작업시,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집적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사업장 준공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정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정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건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정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정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함.
- 본 사업장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사업장이 아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지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빌트인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 동별 주요 고지사항

구 분	내 용
각동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상복합 아파트 특성상 배치 위치에 따라 일조량이 상이하며, 타워형 주동은 판상형 주동의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내외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내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유아)놀이터, 단지내 보행로, 판매/근린생활시설, 인접 수변공원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간섭,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사침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음.</li> <li>- 주동 인근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보관소, Dry Area, 선칸 등이 설치되어 냄새,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각동 지하1층에는 우수저류조가 설치됨.</li> <li>- 주동의 위치에 따라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실외기실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모델하우스, 도면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li> <li>- 각 동에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의 테라스 바닥 마감은 석재 타일로 마감되오니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각 동에 설치되는 테라스의 상하좌우에 면하는 거실은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테라스와 접하는 하부층의 거실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가 축소설치될 수 있음.</li> <li>- 각동의 피로티는 위치별로 피난기구 보관소, 부대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설치공간, 근린생활시설의 주방배기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의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각동 저층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의 환기팬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배치되어 근방용 실외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에서 단지모형 등에서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음.</li> <li>- 당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성상 지상 2층이 지반층에 해당되며, 지상 1층은 데크주차장 및 주동 출입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나 지하층의 구조이며 건축물대장상 1층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지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li> <li>- 고층 건축물의 구조상 현관도에 벽체의 두께가 일반 아파트의 구조체 두께보다 두꺼워 미관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당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면 마감재는 유리 및 외장판넬 커튼월 마감이며, 일부 오픈 발코니, 테라스의 내벽면은 외부용 도장으로 마감되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람, 분양후 실시설계시 일부 상세 디자인, 색채, 마감재의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당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면 외장판넬은 특성상 기상상태 및 보는 각도에 따라 건본주택, 모형, CG등과 다르게 보일 수 있음.</li> <li>- 각동 저층부 입면분할창호(미서기창호) 설치세대의 창호는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나 추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계약자의 요청 시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제공 예정임.</li> </ul>
40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라인은 기부채납으로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한 경계부까지 이격거리가 좁아 준공후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1호, 2호라인 1층은 통합경비실, 관리사무소, 방재실 등이 설치됨</li> <li>- 1호 라인 옥탑부에는 이동통신 옥상형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됨.</li> <li>- 1호, 2호라인 2층 피로티 내부에는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며, 놀이터 이용시 소음, 분진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열교환실,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시설 환기를 위한 DA가 반영되어 있으며, 실시공시 DA 그릴면적인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1호, 2호라인 방향으로 아파트 주차장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아파트 주출입구 도로 바닥면에서 4층 세대 슬라브 까지의 높이 차이는 약 15.5M임</li> <li>- 2호, 3호라인 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의 냉각탑이 설치되며, 백연이 일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4호 라인 1층에 아파트 홀을 통하여 진입가능한 자전거보관소 및 크린넷이 설치됨.</li> <li>- 4호 라인 2층에 아파트 보육시설이 유아놀이터와 연동되어 설치됨.</li> <li>- 옥탑부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됨.</li> <li>- 유아놀이터 진출입 통로구간이 매우 협소하여 진출입이 불편할 수 있음.</li> <li>- 인접도로와 최단 이격거리는 3M, 새만금개발청과 이격거리는 39M임.</li> <li>- 402동과 최단 이격거리는 19M, 냉각탑까지 이격거리는 20M, 403동과 최단 이격거리는 17M임.</li> <li>- 인접대지와 최단 이격거리는 24M이며, 인접한 울망유치원 건물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50.7M임.</li> </ul>
4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라인 1층은 주민공동시설, 2층은 주민공동시설에서 진입하는 주민회의실 및 취미교실이 설치됨.</li> <li>- 2호 3호라인 1층, 2층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3층 피로티 내부에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및 판매/근생시설의 주방배기팬 및 실외기 설치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장비소음 등으로 인접세대의 경우 불편함이 있음</li> <li>- 2호 3호라인 옥탑부 구조물 상단으로 주거용 태양광 장비가 설치됨.</li> <li>- 4호 라인 지상 1층 주동출입구에 인접하여 크린넷 및 재활용 분리수거소가 지하구조로 설치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전기실, 열교환실,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시설 환기를 위한 DA가 반영되어 있으며, 실시공시 DA 그릴면적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3호라인 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의 냉각탑이 설치되며, 백연등이 일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인접도로와 최단 이격거리는 북측 3M, 동측 6M이며, 인접상가와 최단거릴 3M임.</li> </ul>

	- 403동과 최단 이격거리는 43M, 냉각탑까지 이격거리는 23M, 403동과 최단 이격거리는 43M임.
403동	- 1호 라인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호 라인 3층 피로티공간에는 부대시설 설외기, 근린생활시설의 환기팬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배치되어 근생용 실외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2, 3호 라인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의 환기팬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설치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2, 3호 라인 1층은 독서실(남/녀), 2층은 작은도서관이 설치됨. - 3호 라인에 인접하여 주거부에서 상업시설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통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옥탑부에 헬리포트가 설치됨. - 4호라인에 인접하여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위치하며 이격거리는 6.9M임 - 냉각탑까지 이격거리는 15M, 근린생활시설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10M, 404동과 최단 이격거리는 12.9M, 근린공원 최단 이격거리는 11M임.
404동	- 1, 2, 3호 라인 1층 및 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로 이동통선이 많아 저층부세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호 라인 84A타입은 아파트 채광방향으로 기타 동과는 다르게 인접세대 매스에 의해 시각적으로 간섭구간이 있음. - 1호 라인 1~2층은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및 근린생활시설 데크가 설치되어 이용객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호 라인 배면으로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호 2호 라인에 인접하여 주거부에서 상업시설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통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호 라인 옥탑부에는 이동통신 옥상형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됨. - 2, 3호 라인 1~2층은 근린생활시설용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되어, 장비 작동 및 이용객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 라인 피로티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환기팬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배치되어 근생용 실외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3호라인 하부는 근린생활시설임. - 2, 3호 라인 옥탑부 구조물 상단으로 주거용 태양광 장비가 설치됨. - 1, 4호 라인 배면방향으로 아파트 지반층(2층)에 주민공동시설 로비 및 샤워/락카룸, 1층에 휘트니스, GX,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및 퍼티장이 설치됨. - 403동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12.9M, 근린생활시설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5.2M임.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13M, C35 상업업무시설 건물까지 이격거리는 44M임 - 냉각탑까지 이격거리는 17.9M, 405동까지 이격거리는 8.9M, 406동까지 이격거리는 50M임.
405동	- 1호 라인에 인접하여 자동크린넷/재활용분리수거소가 배치됨. - 1호 라인 84A타입은 아파트 채광방향으로 기타 동과는 다르게 인접세대 매스에 의해 시각적으로 간섭구간이 있음. - 2호 라인 옥탑부에는 이동통신 옥상형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됨. - 2, 3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의 냉각탑이 설치되며, 백연 등이 일부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옥상부에 환기팬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배치되어 근생용 실외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3호라인 하부는 근린생활시설임. - 3, 4호 라인 2층 피로티층에 경로당이 설치됨. - 3호라인 주채광방향으로 자동크린넷/재활용분리수거소가 배치됨. - 옥탑부의 최상단부 구조물 디자인은 기타동과 상이함. - 403동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46M, 405동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8.9M, 406동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26.8M임. -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는 9M, 인접단지 주동까지 최단거리는 51.1M임. - 자동크린넷/재활용분리수거소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2.4M, 8.4M임.
406동	- 1, 2, 3호 라인 1층 및 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로 이동통선이 많아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호 라인 3층 피로티 층에는 부대시설 설외기, 근린생활시설의 환기팬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배치되어 근생용 실외기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2, 3호 라인 주채광방향으로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옥탑구조물이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서 조망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로경계까지 이격거리는 9.3M, 버스정류장까지는 약 18M, 인접 가재마을9단지 주동까지 최단거리는 64M임. - 405동까지 이격거리는 26.8M, 냉각탑까지 이격거리는 23.7M, 재활용분리수거소까지 이격거리는 16.8M, 근린생활시설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14.5M임.

####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2등급 이상 기밀성창호 설치	
의무사항 이행 여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변압기	적용	전동기, 펌프, 변압기
		전동기	적용	
		펌프	적용	
		보일러	해당없음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세대별 온수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수조절장치 설치
	절수기기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행복도시 1-5 생활권 H5 주상복합(공동주택)
2. 신청자: 한신공영㈜
3.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BL 주상복합용지(P1)
4. 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류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율 제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저공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거문다리 선택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밀폐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권면초	★★★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제한	-
3. 토공사 절감토량 최소화	-
4. 밀조권 건설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상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절 기술의 적용	★★
9. 온천수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연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천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사)한국그린빌딩협회의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행복도시 1-5 생활권 H5 주상복합(공동주택)	인증번호	: KGBC-C-a-420
건축주	: 한신공영㈜	인증기관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공(예정)일	: 2022.03.31.	유효기간	: 2018.10.30. ~ 사용검사일까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BL 주상복합용지(P1)	<b>인증 등급</b>	
층 수	: 지하3층, 지상35층		
면적	: 126,021.4814㎡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부리시설)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1]건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1호
설계자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사)한국그린빌딩협회의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 받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발급번호		
		K311-C		
1. 사업명	행복도시 1-5 생활권 H5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한신공영(주)			
3.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H5BL 주상복합용지(P1)			
4. 사업개요				
대지면적	23,121.80 m <sup>2</sup>			
건축면적	16,134.86 m <sup>2</sup>			
면적	141,634.95 m <sup>2</sup>			
총세대수	596 세대			
주건축물수	6 개동			
5. 대상지역	지역 II			
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소	적합	부적합	비고
출입문	16 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시험
벽체접합부	990 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이드라인
창호	108 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시험, 시뮬레이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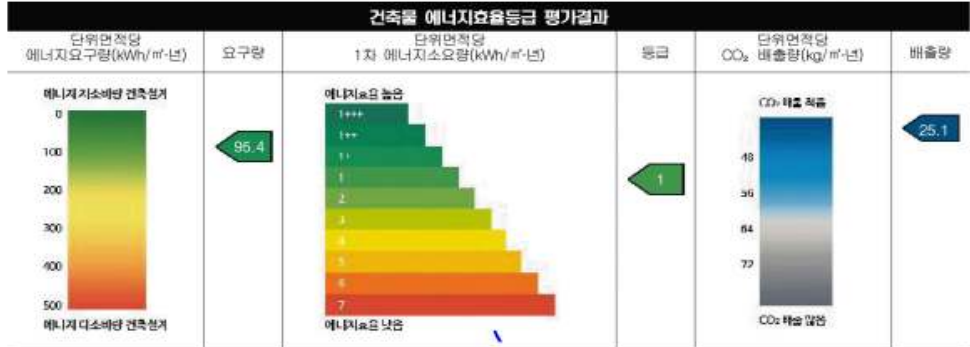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행복도시 1-5생활권 H5 주상복합 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18-주-에-1-1096
준공연도	2021년 12월 31일	평가자	노경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0	인증기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수	지하3층 / 지상35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26021.4814(m <sup>2</sup> )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b>인증등급</b>	
설계자	(주)디에이그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4.4	69.1	53.1	11.8
급탕	30.7	39.7	31.0	6.8
조명	10.3	10.3	28.2	4.8
환기		3.7	10.1	1.7
합계	95.4	122.8	122.4	25.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 설치됨 [✓] 설치되지 않음 )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18년 10월 25일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 급	AA등급		비 고
	기 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성형배선	침입감지기	
	2	배선(Cat 5e 4페어 이상)	차량통제기	
	3	16C 이상(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22C 이상)	전자경비시스템	
	4	집중구내통실면적(2㎡)	무인택배시스템	
	5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6	단지 서버실(MDF)	주방TV	
	7	폐쇄회로 TV장비(CCTV)	일괄소등 제어	
	8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 도어락	
	9	조명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10	난방 제어기	주차위치 인식시스템	
	11	현관방범 감지기	현관도어카메라	
	12	주동현관 통제기	예비전원장치	
	13	원격검침 전송장치	대기전력차단장치	
	14	-	환기장치 제어	
	15	-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432,841,000원	VAT별도
전 기	(주)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89,692,727원	
정보통신, 소방	세종종합기술(주)	715,000,000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종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9,725,900,00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는 가격
	기간이자	2,347,314,160	택지를공급받기위하여택지비의일부또는전부를납부한경우 그납부일부터별표1의2에따라산정한택지대금에대한이자
	그밖의 비용	2,890,579,557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44,963,793,717	
공사비	토목	8,723,724,000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 공사비
	건축	102,302,131,605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	15,505,427,830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밖의 공종	26,690,450,084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밖의 공사비	19,327,567,302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72,549,300,821	
간접비	설계비	3,778,407,906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4,111,287,1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3,604,715,261	주택건설공사에소요되는총비용중공사비,설계비,감리비및 제4호에따른비용을제외한비용으로서분양관련비용,수도· 가스·전기시설인입비용,건물보존등기비등을합한비용
계		11,494,410,267	
그밖의 비용		38,546,495,196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267,554,00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87,287,800,000원	제01292018-104-00046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금융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증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증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비고(등록번호)
시행사	한신공영(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02-3393-3114	114-81-04605
시공사				
분양대행사	(주)산하이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세원빌딩 10층	02-586-5400	214-88-22445

▣ **건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sejong1-thehue.com>**

▣ **건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544-9085 / 1544-911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